2021년 「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」 상반기 모집 공고문

경기도 내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「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」 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□ 신청자격

○ **[모집대상]** 2020.1.1.일 이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해 투자받은 스타트업

※ 플랫폼 회원 간(스타트업-투자자) 투자 성사된 스타트업

구 분	신청 요건
스타트업	◦ 회사 설립일※이 7년 이내인 기업(**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)** ◦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◦ 업종/업태가 기술창업인 경우 ※ 회사설립일 기준 : 개인사업자(사업자등록증명 상 '사업개시일(개업일)' 기준) 법인사업자(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) (단,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,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)
투자자	◦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회원사※로 투자자금 메뉴 내 투자회사로 등록된 경우 ※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회원사

○ **[모집규모]** 5개사 내외

○ **[모집분야]** 기술창업분야

1) 기계/재료, 전기/전자, 정보/통신, 화공/섬유등 기술창업분야,

2) 콘텐츠, 출판, 영상업등 지식창업분야,

3) 공예/디자인, 식료품등 제조업, 아이디어 상품 등 아이디어창업분야,

4) 앱/플랫폼 개발등 IT창업분야,

5) IoT/빅데이터/AI/첨단로봇/3D프린팅/친환경 에너지 등 4차산업창업분야

□ 지원규모 : 최대 30백만원 이내

○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유치액의 50% 이내,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가입 후 1회에 한해 지원됨.

○ 기업부담금(총 사업비의 20% 이상)

투자사 투자금	사업화지원금(사업비)	
	경기도 지원금	스타트업 부담금
경기도 지원금의 50% 이상	총 사업비의 80% 이내 (최대 30백만원)	총 사업비의 20% 이상 (현금※+현물) ※ 현금은 기업부담금의 50% 이상

□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1년 11월말 이내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지원(아이템개발비, 지식재산권비, 광고홍보비 등)

분야	지원내용		비고
아이템 개발비	◦ 금형, 목형,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,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,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, 제품 기구설계, PCB 설계, 금형설계 등 ※ 외주용역비 :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※ 재료구입비 :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품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 (제품제작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)		사업화 지원
	지식서비스 분야	◦ 외주용역(개발)비, 소프트웨어 임차비만 인정 -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구입 인정	
		◦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(개발 인건비) - 인건비는 협약기간내 신규 채용자에 한함 (총비용 80% 고용인원 1인 월 최대200만원)	
		◦ 협약기간 중 기자재 임차료만 인정	
지식 재산권	◦ 지식재산권 출원비(등록비) 지원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		
멀티 미디어	◦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, 홍보용 모바일 웹/앱 지원 ◦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 ※ (제외) 제품·서비스 자체를 구성하는 앱 개발 비용, 기존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리뉴얼 등		마케팅 지원

분야	지원내용	비고
디자인	◦ 전자·종이 카달로그, 포스터·포장 디자인, 브랜드 개발, 제품 디자인 등 ※ (제외) 제품·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장비 구입비 등	
광고 홍보	◦ TV 라디오 광고, 신문·전문지 홍보, 지하철·버스·옥외 광고, 온라인 홍보, 크라우드 펀딩(온오프 입점 등), 국내외전시 참가비용 등 ※ (제외) PPL, 팟캐스트, 소비자 반응 조사 등	
기타 지원	◦ 해외전시회 참가지원, 해외세미나, 포럼, 기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, 회계감사비(회계감사보고서), 시장조사비용 등	글로벌 지원 및 기타

□ 추진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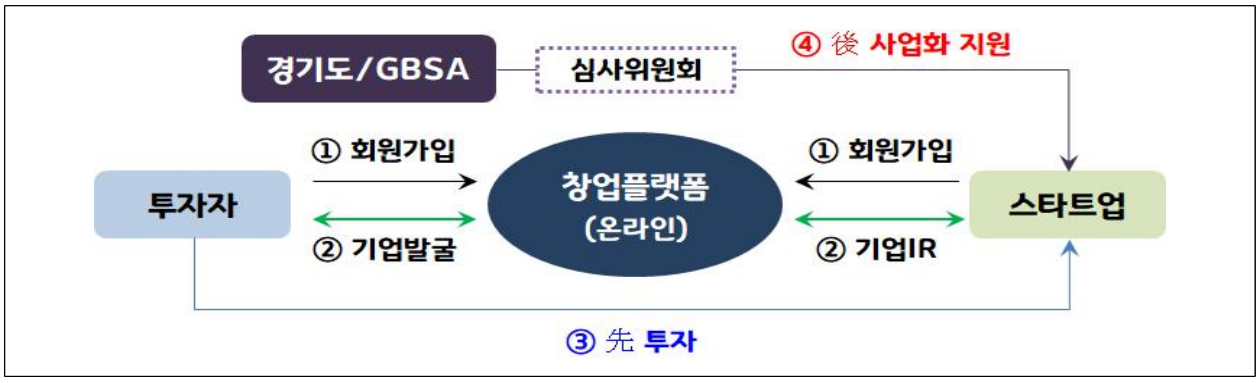

□ 신청기간 및 접수

○ [신청기간] 2021.02.23. ~ 04.09.

○ [신청방법]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플랫폼 내 “지원사업”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
- 마이스페이스홈 - 활동이력 - 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확인 필요
- 신청서류
  - · 참여신청서, 스타트업 추천서
  - · 사업계획서, 지원금 사용계획서
  - ·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투자금 송금확인증
  - ·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(신청기업,투자사)
  - · 성과증빙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
  - ·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
  - · 각종 동의서(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, 창업 동의, 지식재산권 분쟁책임 동의)

※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- 창업팀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동일(유사포함) 과제로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(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 지원, 멘토링·컨설팅 지원, 행사·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) 또는 협약체결 기간 중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하는 자
- 창업팀 추천일 기준으로 현재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)등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기업
-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(민간투자연계형)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중도 포기한 자

□ 향후 일정

모집공고	⇨	1차심사 (서류심사)	⇨	2차심사 (발표심사)	⇨	협약체결
‘21.02.23~04.09		‘21.04.16		‘21.04.23		‘21.5월 중순

※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□ [문의처]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사업 담당자
031-8039-7103 / mykim@gbsa.or.kr

【붙 임】 신청서류 양식 각 1부. 끝.